

오산 세교 우미 린 포레아시티 | 일반공급 서류접수 안내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일자	시간	장소
2026.08.07.(금) ~ 08.13.(목)	10:00 ~ 16:00	주택홍보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산척동 734-1, 5층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용도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용으로 발급 ※ 인터넷 발급시 제출처 '오산 세교 우미 린 포레아시티'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및 해당자	사업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용 제출 불가
		○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주택홍보관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서명가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07.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오산 세교 우미 린 포레아시티 | 특별공급 서류접수 안내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일자	시간	장소
2026.08.07.(금) ~ 08.13.(목)	10:00 ~ 16:00	주택홍보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산척동 734-1, 5층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공동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용도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용으로 발급 ※ 인터넷 발급시 제출처 '오산 세교 우미 린 포레아시티'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혼인 예정 시 - 예비배우자 및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소득이 없는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및 해당자	▪ 사업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청년, 청년세여형		○	부모소득관련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 부부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자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주택홍보관 비치)
		○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예비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배우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예비배우자의 직계비속일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용 제출 불가
		○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주택홍보관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서명가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07.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오산 세교 우미 린 포레아시티 | 특별공급 안내(소득기준 및 증빙서류)

I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임차인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6.07.24.(금)	전년도 소득(2025년)	전년도 소득(2025년)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2인 중 계약자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1주택을 신청(청약)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
 ※ 임차인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청년, 청년 세여형))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청년, 청년 세여형))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약약을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점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상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I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항목)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I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포함)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직장가입자만 해당)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